

새마을금고 정관(예)

제3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제2호, 제4호,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상근이사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개정 1998.12.2, 2001.12.20, 2005.11.4, 2006.12.14, 2007.12.17, 2011.10.25, 2016. 1.20, 2018. 9. 6>

1.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·제12호의2·제13호·제13호의2·제14호·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
2.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에 100좌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

※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출자 1좌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적용하고,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출자 1좌의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적용한다.

※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3.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금고 또는 그 밖에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에게 1백만원 이상의 채무(원리금을 포함하되 보증채무를 제외함)를 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

3의2.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관련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 또는 어음·수표 부도 관련 부도정보에 등록된 자

4.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, 적립식예금, 거치식예금, 대출금, 공제유효계약 중 2가지 이상의 실적이 없는 자

※ 직장금고 및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5.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확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6. 삭제<2011.10.25>

6의2. 삭제<2011.10.25>

7. 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본 금고의 직원 및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임·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

8. 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본 금고의 임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

※ 본 호를 적용함에 있어 임원이 그 직을 가지고 동일한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
9. 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공무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

※ 본 호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하며,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0. 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

임원선거규약(예)(제1안)

제14조(피선거권) ① 금고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. 다만, 정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자 및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금고의 사업이용실적(선거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날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되,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개정 2018. 9. 6>

1.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평잔 : (960,000원) 이상
2.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(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의 합계) 평잔 : (8,570,000원) 이상
3. 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: (7,790,000원) 이상
4. 정관 제48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: (1건) 이상

※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은 규약 개정일 현재 정관 제55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은 최근 1회계연도의 당해 금고 전체 거래자(각 회계연도 말 거래자 수 기준)의 평균잔액의 100분의 30 이상부터 평균잔액 이내에서, 제4호의 내용은 1건 이상 5건 이내에서 과도하지 않는 범위내로 금고의 실정에 따라 규정하여야 하고,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금고에서 추가로 피선거권 제한사유를 규정할 수 없다.

※ 직장금고 및 설립이나 합병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 제1항의 단서 중 금고의 사업이용실적과 관련된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※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금액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.

(비 고)

제0조(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약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피선거권 자격기준 기산일은 임원선거공고일 전날로 한다.<개정 2009.7.15, 2011.10.25, 2018. 9. 6>

③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외 효력이 상실된다.

④ 임원 후보자는 다른 임원의 직에 동시에 입후보 할 수 없다.<신설 2005. 11.3>